

울산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66342(본소), 2018가단7465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영재

변론 종결 2019. 11. 12.

판결 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0,037,2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울산 남구 D 지상 상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7.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시행하였으나 C 대표이사 E이 잠적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8.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미지급대금 5,800만 원을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인 2017. 3. 15. 6,000만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공사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은 이를 바탕으로 F은행에 기성대출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2017. 5. 19. 500만 원, 같은 해 8. 23. 4,000만 원, 같은 해 10. 23. 5,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설령 피고가 C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등 제3자가 그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확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서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15. 6,0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은 C의 대표인 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이 법원의 H은행, F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C이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F은행에 기성대출금 요청을 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에게 2017. 5. 19. 500만 원, 같은 해 8. 23. 4,000만 원, 같은 해 10. 23.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공사비수령확인서가 F은행에 제출된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요청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제3자가 부당하게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공사비 수령확인서상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확약서 관련 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F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다른 공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직불약정금중 3,800만 원과 지급하기로 한 추가공사대금 2,037,200원 합계 40,37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직불약정금 관련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확약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3,800만 원(5,800만 원 - 기지급금 2,0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관련 부분

을4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추가공사대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37,21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12. 2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